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5-160
----------	--------

2025. 12. 1.  
전문위원 신준호

### 1. 제출경위

가. 제출자 : 마포구청장(깨끗한마포과)

나. 제출일 : 2025. 11. 14.

다. 회부일 : 2025. 11. 18.

### 2. 제출이유

현행 조례의 재활용가능품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정하여 재활용가능 품목을 표준화하고 재활용가능품목의 분리배출로 자원화를 확대하여 종량제 폐기물의 감량을 추진하고자 제출됨.

###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수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나. 재활용가능품 품목의 배출 요령 규정 전부 개정(별표 2)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5. 10. 10. ~ 2025. 10. 30.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는 재활용가능품의 분리 배출 품목 및 배출요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2020년 8월 24일 일부개정에도 조례 내용이 상위 지침의 세부 기준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과 배출요령을 현행화하여 종량제봉투 반입 폐기물의 감량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는 단순 표기 정비로서 의견 없음.
- 별표 2 재활용가능품 목록 및 배출 요령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을 근거로 품목 및 배출요령을 세분화하였음.
- 그러나, 조례상 ‘재활용가능품’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된 ‘재활용가능자원’과 상이하여, 법령체계상 비법정용어로 판단됨. 따라서, 용어의 일관성 및 법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향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자원재활용법」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법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분리수거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단지 상위 지침을 준수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재활용가능자원 목록 및 배출요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률상 위임이 없는 사항에 대해 조례로 세부적인 분리 배출 품목 및 요령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자치입법으로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적·현실적 차원의 필요성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체계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제출되었음.
- 그러나,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용어체계가 맞지 않고,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품목 및 배출요령을 규정하는 것은 위임근거가 없는 자치입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 문언 수정의 범위를 넘은 수정사항으로 의회 차원의 수정의결도 법적·기술적으로 불가하므로 집행부에서 재검토 후 재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에서 준용조항 중심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지침 개정 시 자동 반영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개정하여 법체계성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產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 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25. 10. 1.>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